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7. 21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토지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정우진, 사무관 고경표, 주무관 김재현 ·☎ (044) 201-3402, 3407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신규주택 취득사유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.

### 【 관련 보도내용 (7.21. 머니투데이) 】

- ‘매뉴얼 없는’ 토지거래허가제… 강남·송파구 ‘제멋대로’
  - 구역 지정 한달 지나도록 ‘거주사유’ 가이드라인 불명확
  - 강남 ‘처분계획서 제출’, 송파 ‘취학·통원’ 판단기준 달라

-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,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·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.
  - 또한, 허가구역이 속한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 또는 연접 시·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既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(매매·임대 등)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「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」 제6조제1항 및 제2항

-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,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서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내용을 개별·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
- 다만,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**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** 있으며, 취학·통원 등 보도에서 언급된 **특정한 사유만으로 제한**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- 아울러, 허가구역이 속한 시·군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, 통근편의 등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**허가를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드립니다.
- 국토부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**면밀하게**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**관할 지자체**를 지속적으로 **독려·지원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**이용실태 조사** 등을 통해 **이용의무 준수 여부**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